

|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위험 | 상 위험 | 다 소 위험 | 보 통 위험 | 중 위험 | 매 우 위험 |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적전환형증권투자신탁 H[주식혼합-파생형] (운용전환일 이후)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적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적전환형증권투자신탁 H[주식혼합-파생형]**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적전환형증권투자신탁 H[주식혼합-파생형]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적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부국증권 등)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8년 05월 0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06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08일 (예정)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내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이 투자신탁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모집기간 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부터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완료일에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선취판매수수료(A클래스 기준, 납입금액의 1% 이내)가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수익률은 투자원금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달성한 누적수익률과 투자자의 투자원금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목표기준가격 달성일 이후 채권형 투자신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 전환과정에서 주식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로부터 주가의 급격한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최종실현수익률은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해외주식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의 거래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도 관련 주식을 처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만기상환, 전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18.05.07)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파생형]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 코드 : C9767)

| | | | | | | |
|--------------------------------------|----------------|----------------|----------|----------|----------------|-------------------------------------------------------------------------------------------------------------------------------------------------------------------------------------------------------------------------------------------------------------------------------------------|
|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 | | |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파생형]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상위 이전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으로, 최초설정일 이후 누적기준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 관련 자산을 매입하여 증권투자신탁[채권]으로 전환하는 목표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전환 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파생형] 단, 전환완료일 이후에는 [채권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 | |
| 집합투자업자 | 유리자산운용(주) ☎ 02-2168-7900 | | |
| 모집(판매) 기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08일 |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단,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효력발생일 | 2018년 06월 29일 | 존속 기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단, 전환조건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판매회사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부국증권 등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 | |
| 종류(Class) 및 가입자격 | 종류 A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종류 A-e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온라인 전용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제한 없음 종류 C-e 수익증권 : 가입제한 없는 온라인 전용 종류 F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 | |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환매수수료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보수 (연%) | 구분 | 최초설정일 ~ 6개월까지 | | 6개월 경과 후 ~ 1년까지 | | 1년 경과 후 ~ 신탁계약 만료일까지 | | 운용전환일 이후 | |
| | 종류(Class) | A | C | A | C | A | C | A | C |
| | 판매 | 0.500 | 1.000 | 0.250 | 0.800 | 0.125 | 0.600 | 0.015 | 0.030 |
| | 운용 | 0.900 | | 0.900 | | 0.450 | | 0.070 | |
| | 신탁 | 0.060 | | 0.060 | | 0.060 | | 0.020 | |
| | 사무관리 | 0.015 | | 0.015 | | 0.015 | | 0.010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총보수·비용 | 1.475 | 1.975 | 1.225 | 1.775 | 0.650 | 1.125 | 0.115 | 0.130 |
| ※ 주식사항 |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상기 보수율은 A클래스 및 C클래스만 기재하였습니다. 다른 유형의 클래스(A-e, C-e, F)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매입 방법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2018년 06월 11일)의 기준가격 | | | 환매 방법 | <전환 전> · 17시 이전 :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9영업일에 대금지급 · 17시 경과 후 : 제6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10영업일에 대금지급 <전환 후> ·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3영업일에 대금지급 · 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 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 | | | | | | |
| 누적운용수익률 | 전환조건의 기준이 되는 누적운용 수익률은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는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기준으로 1,060원)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부터 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완료일에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환일 이전]

○ 비교지수 : [VN Index(USD) × 70%] + [Call금리 × 30%]

[전환일 이후]

○ 비교지수 : 없음

- 주1) "목표기준가격"이라 함은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60원을 말한다. 수정기준가격이란 집합투자계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세전 기준가격을 말한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주2) "운용전환완료일"이라 함은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포함)부터 제8영업일을 말한다.
- 주3) 이 집합투자기구의 Class A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선취판매수수료(납입금액의 1% 이내)가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수익률은 투자원금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달성한 누적수익률과 투자자의 투자원금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90%이하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 베트남의 업종 우량종목 : 우량종목 매수 후 장기 보유하여 연 50%미만의 낮은 매매회전을 유지
 - 장기 성장성이 있는 섹터 : 베트남 신정부의 신경재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등 각종 정책 수혜 종목
 - 저평가 우량 중소형주 적극 발굴 : 밸류에이션과 배당을 고려하여 배당수익률이 높고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 발굴
 - 분할매수를 통한 점진적 자산 편입 : 분할매수를 통해 고점 투자 위험 최소화 및 Cost Averaging 기대
-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판단시 피데스자산운용(주)의 자문서비스를 참고하여 투자합니다.

| | |
|--------|-----------------------------------------------------------------------------------------------------|
| 회사명 | 피데스자산운용(주) |
| 운용자산규모 | 총 13,850억원, 베트남운용 9,862억원 (2018.03.월말 기준) |
| 주요 사업 | 한국 및 베트남 주식의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
| 회사연혁 | 1998.04 회사설립 2007.07 피데스호치민사무소 개설 및 베트남 주식 리서치 시작 2008.10 베트남상장기업편람 창간(매년 2회 베트남상장기업투자가이드 발간) |

- 다만,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인 1,060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운용전환완료일 전 : 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주로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투자 전략]

- ▷ 우량종목, 장기 성장성이 있는 섹터 및 저평가 우량 중소형주 등을 적극 발굴하여 분할매수를 통해 점진적으로 매입
- ▷ 최초 설정이후 30~50% 수준 초기편입 후 시장변동 및 매월 목표 편입비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편입 예정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신용도 높은 국내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위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전략]

- ▷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국공채, 통안채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 채권 듀레이션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절하여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달성일 이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전환완료일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또한 투자한 해외주식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의 거래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도 관련 주식을 처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만기상환, 전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채권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향후 금리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관련 자산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8영업일 전일의 누적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Class A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수정기준가격 1,060원)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관련 자산 등 보유자산을 모두 매도하여 만기 일에 현금화 된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투자종목의 거래정지 및 장기간의 휴장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기상환금 지급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운용전환완료일 전]

[2018.05.07. 기준, 단위: 개, 억]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 |
| 책임 운용전문인력 | 한진규 | 1969 | 퀀트 운용 본부장 | 44 | 7,085 | - KAIST 경영공학 학사 - KAIST 금융공학 박사 - '95.02~'99.01. 한국투자증권 - '00.02~현재. 유리자산운용 |
|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음 | | | | |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2018.05.07. 기준, 단위: 개, 억]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 |
| 책임 운용전문인력 | 이석호 | 1985 | 채권 운용 과장 | 64 | 27,233 | - KAIST 수학과 - '09.12~현재. 유리자산운용 |

| | |
|-----------------------|---------|
|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해당사항 없음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 주요 내용 |
|---------------|----------------------------------------------------------------------------------------------------------------------------------------------------------------------------------------------------------------------------------------------------------------------------------------------------------------------------------------------------------------------------------|
| 원금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투자자산보다 가격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u>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베트남 동화 표시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종통화인 달러화를 활용하는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화-달러화 통화 변경은 달러화와 동화간의 상대적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이 투자신탁의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달러화 통화 변경 전략도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u> |
| 집중투자위험 | 베트남 내 소수 종목,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 시 이에 따른 변동성 및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개별국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베트남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부정책, 주식시장 및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한도 변경 등 주식시장 개방성 변화, 주식시장 호가제도·거래시간 등 주식시장 관련제도의 변경, 외환 관련 제도의 변경, 조세체계 변경 등 정부 정책적 변수 및 타국가와 비교하여 주식 발행기업의 회계제도·공시제도 등의 투명성·공정성의 미비 발생에 따라 주된 투자대상인 베트남주식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시장 전체에 |

| | |
|------------------------------|-----------------------------------------------------------------------------------------------------------------------------------------------------------------------------------------------------------------------------------------------------------------------------------|
| | 투자하는 일반 국내투자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운용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목표기준가격 기준 Class 수정기준가 1,060원)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전환과정에서 주식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로부터 주가의 급격한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실현이익이 전환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 주식은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내부의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동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중 통화인 달러화를 활용하여 원화-달러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달러화를 이용한 원-달러 통화변경 전략은 원화와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은 회피할 수 있으나 달러화와 동화의 상대적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는 노출되게 되므로 달러화와 동화의 움직임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 주식 투자로 인한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는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달러화 통화 변경 전략도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통화 변경 전략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통화 변경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통화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통화 변경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 명칭 |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적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H[주식혼합-파생형]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적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 | | | | |
| 클래스 | 운용 | A | A-e | C | C-e | F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9767 | C9768 | C9769 | C9770 | C9771 | C9772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파생형), 운용전환완료일부터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주1) 이 투자신탁은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30억원)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투자금액은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08일까지 모집(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 가능)하여

2018년 06월 11일 설정예정

나. 모집장소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부국증권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장소는 추가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 명칭 |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H[주식혼합-파생형]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유리베트남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 | | | | |
| 클래스 | 운용 | A | A-e | C | C-e | F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9767 | C9768 | C9769 | C9770 | C9771 | C9772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등록사항 |
|------------|---------------------------------|
| 2018.06.11 | - 최초설정 |
| 2018.06.29 |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안 내용 보완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내에 운용전환완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완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까지
- 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운용전환완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대표전화 : 02-2168-7900 홈페이지 : www.yurieasset.co.kr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전환완료일 전]

[2018.05.07.기준, 단위: 개, 억]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 |
| | | | | | | |

| | | | | | | |
|-----------------------|---------|------|-----------------|----|-------|--------------------------------------------------------------------------------------|
| 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한진규 | 1969 | 퀀트 운용 본부장 | 44 | 7,085 | - KAIST 경영공학 학사 - KAIST 금융공학 박사 - '95.02~'99.01. 한국투자증권 - '00.02~현재. 유리자산운용 |
|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해당사항 없음 | | | | |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2018.05.07.기준, 단위: 개, 억]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 |
| 책임 운용 전문 인력 | 이석호 | 1985 | 채권 운용 과장 | 64 | 27,233 | - KAIST 수학과 - '09.12~현재. 유리자산운용 |
|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해당사항 없음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퀀트운용본부(10개 펀드, 13,432억), 채권운용본부 (11개 펀드, 10,448억)]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파생형] (운용전환완료일부터) 증권[채권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가입자격 |
|-----|----------------------------------------------------------------------------|
| A | 제한없음 / 선취수수료 부과 |
| A-e | 온라인 가입자 / 선취수수료 부과 |
| C | 제한없음 |
| C-e | 온라인 가입자 |
| F | 집합투자기구,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

주1)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주2)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는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주1)}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기준으로 1,060원)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부터 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완료일^{주2)}에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1) "목표기준가격"이라 함은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60원을 말한다. 수정기준가격이란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세전 기준가격을 말한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을 목표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주2) "운용전환완료일"이라 함은 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포함)부터 제8영업일을 말한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의 Class A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선취판매수수료(납입금액의 1% 이내)가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수익률은 투자원금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달성한 누적 수익률과 투자자의 투자원금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구분 | 투자비중 | | 내용 |
|----|---------------|----------------|------------------------------------------------------------------------------------------------------------------------------------------------------------------------------------------------------------------------------------------------------|
| | 운용전환 완료일 전 | 운용전환 완료일 이후 | |
| 주식 | 90% 이하 | 0%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 |
| 채권 | 50% 미만 | 60% 이상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 | | |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
| 자산유동화 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
| 어음 등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
| 집합투자증권 등 | 4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다만,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는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
|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 10% 초과 가능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상품을 포함한다) 및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 또는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는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한한다. |
| 환매조건부 매도 | 채권 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증권의 대여 | 증권 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증권의 차입 | 자산총액의 20% 이하 |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 부매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제한의 내용 |
|----------------|---------------------------------------------------------------------------------------------------|
|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

| | |
|--|--------------------------------------------------------------------------------------------------------------------------------------------------------------------------------------------------------------------------------------------------------------------------------------------------------------------------------------------------------------------------------------------------------------------------------------------------------------------------------------------------------------------------------------------------------------------------------------------------------------------------------------------------------------------------------------------------------------------------------------------------------------------------------------------------------------------------------------------------------------------------------------------------------------------------------------------------------------------------------------------------------------------------------------------------------------------------------------------------------------------------------------------------------------------------------------------------------------------------------------------------------------------------------------------------------------------------------------------------------------------------------------------------------------------------------------------------------------------------------------------------------------------------------------------------------------------------------------------------------------------------------------------------------------------------------------------------------------------------------------------------------------------------------------------------------------------------------------------------------------------------|
| | <p>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
|--|--------------------------------------------------------------------------------------------------------------------------------------------------------------------------------------------------------------------------------------------------------------------------------------------------------------------------------------------------------------------------------------------------------------------------------------------------------------------------------------------------------------------------------------------------------------------------------------------------------------------------------------------------------------------------------------------------------------------------------------------------------------------------------------------------------------------------------------------------------------------------------------------------------------------------------------------------------------------------------------------------------------------------------------------------------------------------------------------------------------------------------------------------------------------------------------------------------------------------------------------------------------------------------------------------------------------------------------------------------------------------------------------------------------------------------------------------------------------------------------------------------------------------------------------------------------------------------------------------------------------------------------------------------------------------------------------------------------------------------------------------------------------------------------------------------------------------------------------------------------------------|

| | |
|----------------------|---------------------------------------------------------------------------------------------------------------------------------------------------------------------------------------------------------------------------------------------------------------------------------------------------------------------------------------------------------------------------------------------------------------------------------------------------------------------------------------------------------------------------------------------------------------------------------------------------------------------------------------------------------------------------------------------------------------------------------------------------------------------------------------------------------------------------------------------------------------------------------------------------------------------------------------------------------------------------------------------------------------------------------------------------------------------------------------------------------------------------------------------------------------------------------------------------------------------------------------------------------------------------------------------------------------------------------------------------------------------------------------------------------------------------------------------------------------------------------------------------------------------------------|
| | <p>8.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
| <p>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p> |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③ 제2조제4호,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제 17조 제1항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이 주식배당, 무상증자,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의 거래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비율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p> <p>⑤ 제2조제8호에 의한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전영업일까지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90%이하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 베트남의 업종 우량종목 : 우량종목 매수 후 장기 보유하여 연 50%미만의 낮은 매매회전을 유지

- 장기 성장성이 있는 섹터 : 베트남 신정부의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등 각종 정책 수혜 종목
 - 저평가 우량 중소형주 적극 발굴 : 밸류에이션과 배당을 고려하여 배당수익률이 높고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 발굴
 - 분할매수를 통한 점진적 자산 편입 : 분할매수를 통해 고점 투자 위험 최소화 및 Cost Averaging 기대
- 다만,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인 1,060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전략 - 운용전환완료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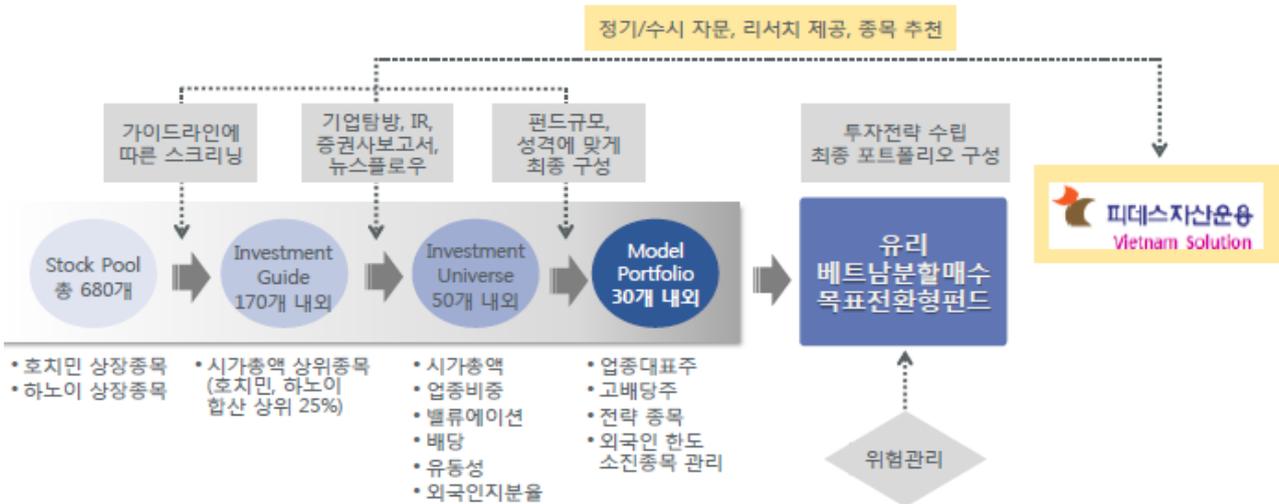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90%이하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 세부운용전략

- 베트남의 업종 대표주와 업종 내 우량 중소형주를 동시에 편입
: 각 업종 대표주 위주로 투자하되, 업종 내 우량 중소형주 발굴을 통해 추가 수익기회 창출 추구
- 각종 정책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
- 저평가 우량 중소형주 적극 발굴 : 밸류에이션과 배당을 고려하여 배당수익률이 높고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 발굴
- 분할매수를 통한 점진적 자산 편입 : 분할매수를 통해 고점 투자 위험 최소화 및 Cost Averaging 기대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판단시 피데스자산운용(株)의 자문서비스를 참고하여 투자합니다.

| | |
|--------|-----------------------------------------------------------------------------------------------------|
| 회사명 | 피데스자산운용(株) |
| 운용자산규모 | 총 13,850억원, 베트남운용 9,862억원 (2018.03.월말 기준) |
| 주요 사업 | 한국 및 베트남 주식의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
| 회사연혁 | 1998.04 회사설립 2007.07 피데스호치민사무소 개설 및 베트남 주식 리서치 시작 2008.10 베트남상장기업편람 창간(매년 2회 베트남상장기업투자가이드 발간) |

○ 투자프로세스



○ 분할매수 전략

이 펀드는 분할매수 전략을 통해 점진적인 자산 편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고점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Cost Averaging 효과를 기대합니다.

| 초기편입비용 | 조정 매수 | 기간 매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0% 수준 편입 > 시장 상황 및 지수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5% 이상(누적) 조정 받을 때 마다 10%p씩 매수 > 주식 매수 상황에 따라 매수 기대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이상 조정이 없더라도 매일 10%p씩 매수 >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투자전략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신용도 높은 국내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위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국공채, 통안채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채권 듀레이션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절하여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다만, 투자한 해외주식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의 거래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하는 경우 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전환되는 투자신탁으로서, 전환을 위한 자산 처분 과정에서 주식관련자산을 처분하는 날의 시장상황(주가 상승 또는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전환완료일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거래정지, 거래소의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한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환완료 이후에도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관련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8영업일 전일의 누적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하더라도 보유 자산을 모두 매도하여 종료일에 상환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식의 거래정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신탁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전략]

○ 위험 관리 체계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운용업 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화표시자산의 50% 이상 수준에서 원화-달러 통화변경 실시 후 이종통화인 달러화를 활용하여 동화 표시 자산에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동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종통화인 달러화를 활용하여 원화-달러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달러화를 이용한 원-달러 통화변경 전략은 원화와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은 회피할 수 있으나 달러화와 동화의 상대적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는 노출되게 되므로 달러화와 동화의 움직임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 주식 투자로 인한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는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달러화 통화 변경 전략도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통화 변경 전략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

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통화 변경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통화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통화 변경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은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환일 이전]

○ 비교지수 : [VN Index(USD) × 70%] + [Call금리 × 30%]

[전환일 이후]

○ 비교지수 : 없음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90%이하로 투자하며, 목표기준가격(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 가격 기준으로 1,060원)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부터 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완료일에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목표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주요내용 |
|-----------|---------------------------------------------------------------------------------------------------------------------------------------------------------------------------------|
| 원금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투자자산보다 가격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 |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u>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베트남 동화 표시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종통화인 달러화를 활용하는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화-달러화 통화 변경은 달러화와 동화간의 상대적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이 투자신탁의 해외투자자 인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달러화 통화 변경 전략도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통화 변경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u>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위험 | 베트남 증권시장의 규모·주식 매매시간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금리변동위험 |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매매비용 과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증권대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차입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 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

| | |
|--|----------------------------------------------------------------------------------------------------------------------------------------------------------------|
| |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 구분 | 주요내용 |
|--------------------|-----------------------------------------------------------------------------------------------------------------------------------------------------------------------------------------------------------------------------------------------------------------------------------------------------------------------------------------------------------------------------------------------------------------------|
| 개별국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베트남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부정책, 주식시장 및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한도 변경 등 주식시장 개방성 변화, 주식시장 호가제도·거래시간 등 주식시장 관련제도의 변경, 외환 관련제도의 변경, 조세체계 변경 등 정부 정책적 변수 및 타국가와 비교하여 주식 발행기업의 회계제도·공시제도 등의 투명성·공정성의 미비 발생에 따라 주된 투자대상인 베트남주식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국내투자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위험 | 베트남 내 소수 종목,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 시 이에 따른 변동성 및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운용 실무상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주된 투자지역이 베트남 주식시장이므로 매매 운용지시, 매매대금 결제, 외화 이동 등으로 인해 주문, 결제 시 오류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가능성이 국내투자 시 보다 더 크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 산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큼니다. 또한, 사용하는 표준시간대가 달라 주식·외환시장의 개장/폐장 시간대가 다르고,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정산위험 |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베트남 시장의 매매와 정산관행이 선진국 시장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투자이익의 실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매매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정산 불가리스크를 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선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지급금의 양도장소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시장관행인 결제 유형을 택하여 그 거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거래의 정산이 실패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책임운용전문인력이나 신탁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 베트남은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운용전환시 발생하는 추가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목표기준가격 기준 Class 수정기준가 1,060원)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전환과정에서 주식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로부터 주가의 급격한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실현이익이 전환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 전환해지, 상환 지연 위험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한 경우 보유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처분할 예정이나, 투자한 해외주식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해외거래소의 장기휴장, 주식의 거래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전환완료일 이후에도 관련 주식을 처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만기상환, 전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목표기준가격 기준 클래스 | 종류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않거나 전부 환매가 되는 경우에는 목표기준가격 기준 수익증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A-e→C→C-e→F 순차적용) 이 경우 투자자가 |

| | |
|-----------|--------------------------------------------------------|
| 변경에 따른 위험 | 기대하는 목표전환시 수익률은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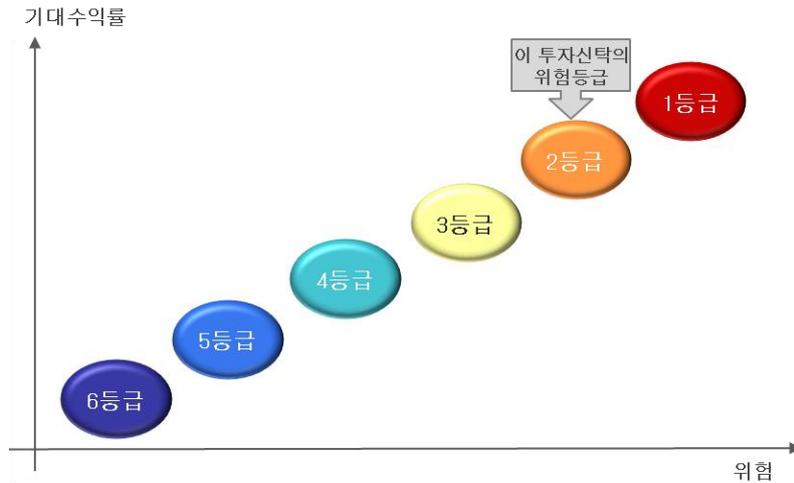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주요내용 |
|--------------------|-------------------------------------------------------------------------------------------------------------------------------------------------------------------------------------------------------------------------------------------------------------------------------------------------------------------------------------------------------------------------------------------------------------------------------------------------|
| 환매가격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을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
| 환매연기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기업의 회계정보 등)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즉,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베트남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공정가액 산정위험 |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권리행사위험 |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중지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정기예금 등 거래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 제한,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
| 대량환매위험 |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

| | |
|----------|---------------------------------------------------------------------------------------------------------------------------------------------|
| |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운용 교란 위험 |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미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해외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채권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주로 국내채권등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등급이 5등급(낮은 위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설명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시장 대표성을 지니거나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추구하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및 인핸스드 인덱스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보통 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낮은 위험 |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①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②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③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④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해지역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 ⑤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수익증권은 모집기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가. 모집기간 및 설정예정일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08일까지 모집하여 2018년 06월 11일 설정예정
나. 모집장소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주1)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구 분 | 가입자격 |
|-----|----------------------------------------------------------------------------|
| A | 제한없음 / 선취수수료 부과 |
| A-e | 온라인 가입자 / 선취수수료 부과 |
| C | 제한없음 |
| C-e | 온라인 가입자 |
| F | 집합투자기구,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수익증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모집기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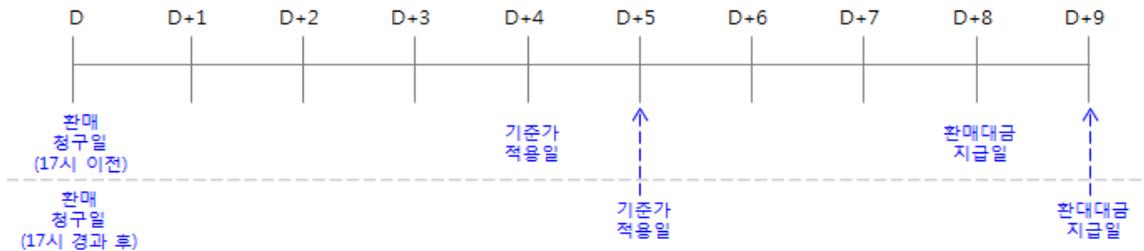
-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완료일까지]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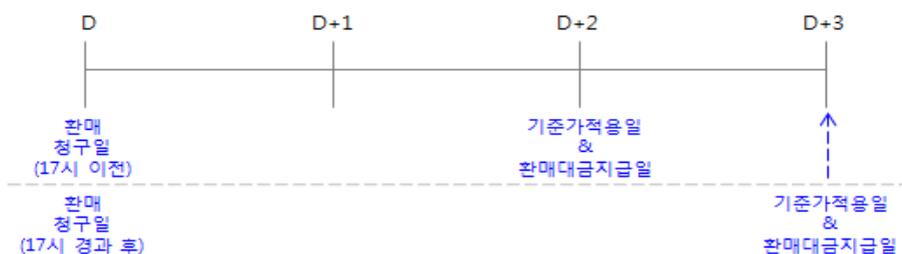


영업일(D+9)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운용전환완료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단, 운용 전환완료일부터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등으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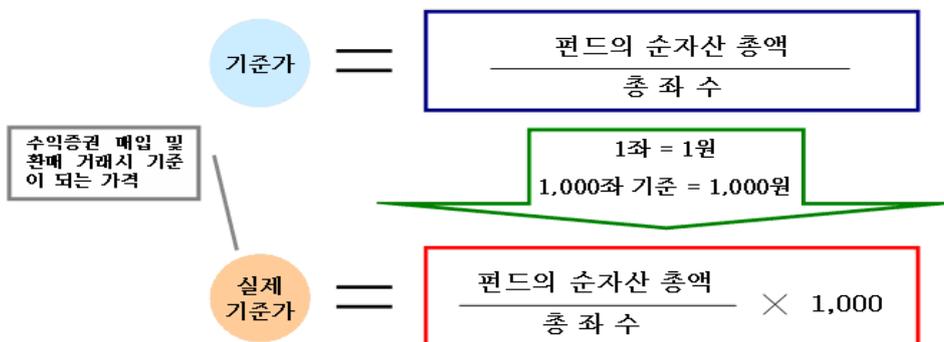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 | | |
|---|---|---|---|
| 구 | 분 | 내 | 용 |
|---|---|---|---|

| | |
|------------|---------------------------------------------------------------------------------------------------------------------------------------------------------------------------------------------------------------------------------------------------------------------------------------------------------------------------------------------------------------------------------------------------------------------------------------------------------------------------------------------------------------------------------------------------------------------------------------------------------------------------------------------------------------------------------------------------------------------------------------------------------------------------|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p>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의 운용전환 기준인 "목표기준가격"은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후 Class A 수익증권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60원임을 말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세금공제 전)을 분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p> <p>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p> <p>가.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 : Class A-e 수익증권의 기준가격</p> <p>나. Class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 : Class C 수익증권의 기준가격</p> <p>다.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 : Class C-e 수익증권의 기준가격.</p> <p>라. Class C-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 : Class F 수익증권의 기준가격</p> |
| | <p>기준가격 산정주기</p> <p>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p>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p>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p> |
| | <p>누적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구 분 | 평가원칙 |
|-----|--------------------------------------------------------------------------------------------------------------|
| 시 가 |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

| | |
|------|-------------------------------------------------------------------------------------------------------------------------------------------------------------------------------------------------------------------------------------------------------------------------------------------------------------------------------------------------------------------------------------------------------------------------------------------------------------------------------------------------------------------------------------------------------------------------------------------------------------------------------------|
| | <p>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공정가액 |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1)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
| 2)예상배당금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추정 예상배당금과 회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결정 |
| 3)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4)시가형성 전 상장신주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구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기준일을 영업년도 말로 보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 ③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미상장주식은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④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
| 5)장내파생상품 |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6)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
| 7)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

| | |
|------------------------|------------------------------------------------------------------------------------------------------------------------------------------------------------------------------------------------------------------------------------------------------------------------------------------|
| 8)상장채무증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
| 9)비상장채무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채무증권 포함) |
| 10)외화표시상장 주식/상장채무증권 |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11)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2)외국집합투자 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3)비상장 외화표 시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14)매각제한 투자 재산 등 |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 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표시재산 - 상기 1)~13)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 구 분 | 주요내용 |
|------|----------------------------------------------------------------------------------------------------------------------------------------------------------------------------------------------------------------------------------------------------------------------------------------------------------------------------------------------------------|
| 구 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간사 : 평가담당부서장(주무 부서장) |
| 회의소집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 기능 | 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의결방법 |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 류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 |
|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C | - | | |
| C-e | | | |
| F | | |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 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 A | A-e | C | C-e | F | 지급시기 |
|-----------------------|-----------|-------|-------|-------|-------|-------|----------|
|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 판매 | 0.500 | 0.250 | 1.000 | 0.700 | 0.030 | 매 3개월 후급 |
| | 운용 | 0.900 | | | | | |
| | 신탁업자 | 0.060 | | | | | |
| | 일반사무관리 | 0.015 | | | | | |
| | 기타비용 | - | | | | | 사유발생시 |
| | 총보수·비용 | 1.475 | 1.225 | 1.975 | 1.675 | 1.005 | - |
| | 합성 총보수·비용 | 1.475 | 1.225 | 1.975 | 1.675 | 1.005 | - |
| | 증권거래비용 | - | - | - | - | - | 사유발생시 |
| 6개월 경과후부터 1년까지 | 판매 | 0.250 | 0.125 | 0.800 | 0.400 | 0.030 | 매 3개월 후급 |
| | 운용 | 0.900 | | | | | |
| | 신탁업자 | 0.060 | | | | | |
| | 일반사무관리 | 0.015 | | | | | |
| | 기타비용 | - | | | | | 사유발생시 |
| | 총보수·비용 | 1.225 | 1.100 | 1.775 | 1.375 | 1.005 | - |
| | 합성 총보수·비용 | 1.225 | 1.100 | 1.775 | 1.375 | 1.005 | - |
| | 증권거래비용 | - | - | - | - | - | 사유발생시 |
| 1년 | 판매 | 0.125 | 0.062 | 0.600 | 0.200 | 0.030 | 매 3개월 후급 |

| | | | | | | | | |
|-------------------|-----------|-------|-------|-------|-------|-------|-----------|-------|
| 경과후부터 해지일까지 | 운용 | 0.450 | | | | | | |
| | 신탁업자 | 0.060 | | | | | | |
| | 일반사무관리 | 0.015 | | | | | | |
| | 기타비용 | - | | | | | | 사유발생시 |
| | 총보수·비용 | 0.650 | 0.587 | 1.125 | 0.725 | 0.555 | - | |
| | 합성 총보수·비용 | 0.650 | 0.587 | 1.125 | 0.725 | 0.555 | - | |
| | 증권거래비용 | - | - | - | - | - | 사유발생시 | |
| 운용 전환완료일 이후 | 판매 | 0.015 | 0.008 | 0.03 | 0.017 | 0.005 | 매 3 개월 후급 | |
| | 운용 | 0.070 | | | | | | |
| | 신탁업자 | 0.020 | | | | | | |
| | 일반사무관리 | 0.010 | | | | | 사유발생시 | |
| | 기타비용 | - | | | | | | |
| | 총보수·비용 | 0.115 | 0.108 | 0.13 | 0.117 | 0.105 | | - |
| | 합성 총보수·비용 | 0.115 | 0.108 | 0.13 | 0.117 | 0.105 | | - |
| | 증권거래비용 | - | - | - | - | - | 사유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합성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6) 투자신탁 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원)]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수익증권 종류 | 투자기간 | 총 보수°비용 |
|-----------|-------------|---------|
| Class A |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 197,876 |
| Class A-e | | 128,994 |
| Class C | | 111,602 |
| Class C-e | | 95,011 |

| | |
|---------|--------|
| Class F | 58,864 |
|---------|--------|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수익증권 종류 | 투자기간 | 총 보수*비용 |
|-----------|------------------------------|---------|
| Class A |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6개월 | 264,835 |
| Class A-e | | 188,238 |
| Class C | | 205,678 |
| Class C-e | | 167,886 |
| Class F | | 112,129 |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수익증권 종류 | 투자기간 | 총 보수*비용 |
|-----------|---------------------------------|---------|
| Class A |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6개월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6개월 | 299,271 |
| Class A-e | | 219,375 |
| Class C | | 265,819 |
| Class C-e | | 206,230 |
| Class F | | 126,833 |

<최초설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수익증권 종류 | 투자기간 | 총 보수*비용 |
|-----------|------------------------------|---------|
| Class A | 최초설정일로부터 2년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6개월 | 333,710 |
| Class A-e | | 250,506 |
| Class C | | 325,843 |
| Class C-e | | 244,589 |
| Class F | | 171,454 |

<최초설정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수익증권 종류 | 투자기간 | 총 보수*비용 |
|-----------|---------------------------------|---------|
| Class A | 최초설정일로부터 2년6개월 +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6개월 | 368,048 |
| Class A-e | | 281,702 |
| Class C | | 386,383 |
| Class C-e | | 282,866 |
| Class F | | 201,364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수익증권 종류 | 투자기간 | 총 보수*비용 |
|-----------|-------------|---------|
| Class A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 385,336 |
| Class A-e | | 295,422 |
| Class C | | 415,654 |
| Class C-e | | 302,599 |

| | |
|---------|---------|
| Class F | 212,045 |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채권형으로 전환한 이후 수익률은 연1.0% 및 3년간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익률은 연1.0%로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매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의 1%이내에서, 종류A-e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의 0.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각각 납입금액의 1%, 0.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약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단계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1)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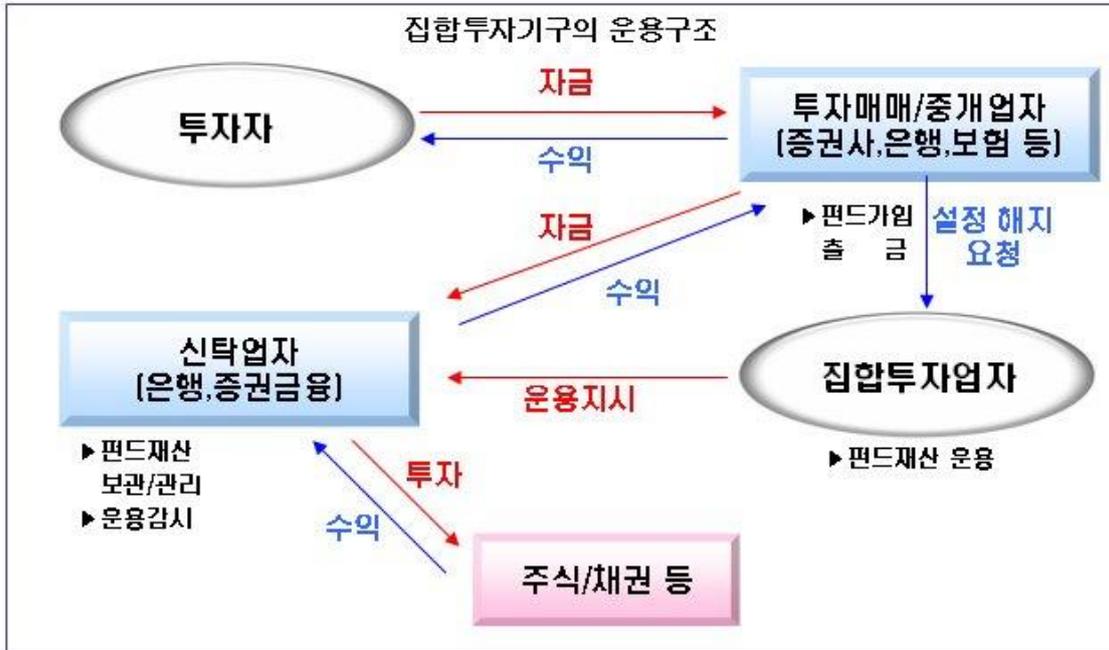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여의도동) ☎ 02-2168-7900 |
| 인터넷홈페이지 | www.yurieasset.co.kr |
| 회사연혁 | 1998.10 회사설립 1999.08 자산운용회사 등록 1999.10 뮤추얼 펀드 판매 게시 2000.03 투자자문업등록 2000.05 투자일임업등록 |
| 자본금 | 153억 |
| 주요주주현황 | 부국증권(주) 99.05% / 우리사주조합 0.92% / 기타 0.03% |
| 이해관계인 |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는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 요약대차대조표 |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구분 | 제 20 기 | 제 19 기 | 구분 | 제 20 기 | 제 19 기 |
| | ('17.12.31) | ('16.12.31) | | ('17.1.1~'17.12.31) | ('16.1.1~'16.12.31) |
| 자산총계 | 35,481 | 32,334 | 영업수익 | 13,382 | 11,555 |
| - 현금및예치금 | 27,819 | 25,664 | - 운용보수 | 6,264 | 5,737 |
| - 유가증권 | 1,361 | 532 | - 자산관리수수료 | 6,216 | 5,069 |
| - 대출채권 | 85 | 187 | - 이자수익 | 404 | 395 |
| - 유형자산 | 98 | 123 | -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이익 | 466 | 354 |
| - 무형자산 | 3,596 | 3,596 | - 당기손익인식증권평가이익 | 33 | 0 |
| - 기타자산 | 2,522 | 2,233 | 영업비용 | 9,192 | 8,336 |
| 부채총계 | 1,053 | 1,185 | -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손실 | 23 | 10 |
| - 예수부채 | - | - | - 수수료비용 | 708 | 271 |
| - 차입부채 | - | - | - 판매비와관리비 | 8,460 | 8,055 |
| - 기타부채 | 1,053 | 1,185 | 영업이익(손실) | 4,191 | 3,219 |
| 자본총계 | 34,428 | 31,148 | 영업외수익 | 135 | 12 |
| - 자본금 | 15,300 | 15,300 | 영업외비용 | 71 | 21 |
| - 자본잉여금 | 198 | 19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54 | 3,210 |
| - 이익잉여금 | 18,930 | 15,651 | 법인세비용 | 976 | 762 |
| 부채와자본총계 | 35,481 | 32,334 | 당기순이익(손실) | 3,279 | 2,448 |

라. 운용자산규모

(2018.05.07 기준, 단위:억)

| 구분 | 증권 | | | | 파생형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MMF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재간접 | | | | | |
| 수탁고 | 5,373 | 1,639 | 25,883 | - | 3,833 | 6 | 732 | - | 37,466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신한은행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 1577-8000 |
| 인터넷홈페이지 | www.shinhan.com |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하나펀드서비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 02-6714-4642 |
| 인터넷홈페이지 | 없음 |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KIS채권평가(주) | NICE피앤아이(주) | 에프앤자산평가(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88 (운니동) ☎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8 (여의도동) ☎ 02)3770-04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 02)739-3590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 02)721-5300 |
| 홈페이지 | www.koreabp.com | www.bond.co.kr | www.nicepni.com | www.fnpricing.com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입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균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격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고유재산 투자금 회수관련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 판매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선정시 고려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 (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단, 유동성이 없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위의 상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가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 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중개사의 평가

- 각 운용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합니다.
 1. 매매체결능력
 2. 중개수수료
 3. 정보제공의 정도
 4. 조사분석자료의 질
 5. 결제이행능력
- 각 운용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중개사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약정배분기준

-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합니다.
 2. 약정 집행은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5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5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 합니다.
 2. 약정집행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3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운용부서는 매 분기 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중개회사별 매매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 투자주체 :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주)
2. 투자목적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투자내용
 - (1) 의무투자기간 : 최소 3년이상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연 해지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만료일 도래로 인한 해지 등의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의무투자기간 이내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시기 및 금액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에 최소투자금액 2억원을 일시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 (3) 투자금의 회수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목표기준가 달성으로 운용전환이 완료되어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해당 해지일에, 목표기준가 미 달성으로 신탁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되는 경우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신탁업자 |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종류형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수정기준가격 | 1 년에 한번씩 있는 펀드 결산과정을 거치면 기준가격은 다시 1,000 으로 재조정되는데, 이 경우 기준가격만을 비교하여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펀드 결산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수익을 계속 누적시켜서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수정기준가격'라고 합니다. 수정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 |

| | |
|---------|---------------------------------|
| | 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